

PURCHASE PROTECTION INSURANCE

The insurer (hereinafter 'the Company') AGREES with (hereinafter 'the Policyholder') Purchase Protection Insurance Trust for the holders of _____ and/or members of _____ who purchase items from the Policyholders, in consideration of the payment of the premium and subject to the limits of liability, exclusions, conditions and other terms of this Policy.

TO PAY the benefits described herein.

This Policy is effective for Twelve (12) months commencing at 12:01 a.m, _____ and shall be renewable for twelve (12) month terms thereafter unless cancelled by the Company or the Policyholder.

This policy is protected by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The KDIC provides coverage up to KRW 100 million per policyholder for the cash surrender value (or insurance proceeds at maturity) along with sundry payments (in aggregate with any other insured financial products you hold with this insurance company). Additionally, a separate coverage of up to KRW 100 million per policyholder is applicable to the sum of insurance benefits from all insured financial products you have with this 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above does not apply to policies subscribed to and paid for by corporate entities.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PART I . DEFINITIONS

COVERED PURCHASE means an item purchased by an Insured and paid for by using an Eligible Account or the Covered Purchase made in () per Policy schedule. For a purchase to be considered a Covered Purchase paid by an Eligible Account, the entire purchase amount for the item must have been made through the Eligible Account.

ELIGIBLE ACCOUNT means the Account(s) described in the Policy Schedule.

INSURED means the Insured described in the Policy Schedule.

MYSTERIOUS DISAPPEARANCE means the vanishing of a purchased item in an un- explained manner where there is an absence of evidence of a wrongful act by a person or persons.

STOLEN(THEFT) means Company regards theft as someone taking an insured item that does not belong to him without permission but exclude as loss and negligence.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PART II. INDIVIDUAL TERMINATION

An Insured's coverage shall terminate on the earliest of 1) the date the Insured is no longer eligible to participate ; or, 2) the date the Eligible Account defined as ineligible by the Policyholder' ; or, 3) the date this Policy is terminated.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PART III. DESCRIPTION OF COVERAGE

Subject to the Policy Schedule, if a Covered Purchase, or a Covered Purchase given as a gift, is stolen or damaged, benefits will be paid subject to Section 1., Purchase Protection : Valuation, up to the amounts described in Section 2., Purchase Protection : Scope of Coverage. Loss must occur within _____ of the date of the Covered Purchase made in _____ per Policy schedule. Coverage Period and Covered Properties are stated in the Policy Schedule.

Company will pay reimbursement within the limited of liability except for amount of deductible. Coverage is limited up to the original purchase amount.

If at the time any claim arises under this policy there be any other insurance covering the same loss, damage or liability, the Company shall not be liable to pay or contribute more than their rateable proportion of any claim for such loss, damage or liability.

1. Purchase Protection : Valuation

The Company shall be liable only for the lesser of the following amounts :

- 1) the amount of the Covered Purchase indicated on the eligible Account ; or
- 2) the actual cost to repair or replace the Covered Purchase with an item of like and quality.

With respect to Covered Purchases which consist of articles in a pair or set, the Company's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the cost of any particular part(s) which may be stolen or damaged, unless the articles are unusable individually and cannot be replaced individually; provided, however, liability for items of jewellery or fine arts consisting of articles in a pair, set, or collection will not be more than the cost of any particular parts which may be lost or damaged, without reference to any special value which such article or articles may have as part of such pair, set of collection.

2. Purchase Protection : Scope of Coverage

The maximum liability of the Company under this Policy is as indicated in the Policy Schedule.

Coverage limits for the Insureds are subject to limitations stated in the Policy Schedule.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PART IV. EXCLUSIONS

This policy shall not cover los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

- 1) boats ;
- 2) motorised vehicles(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irplanes, watercraft, automobiles and motorcycles) or their motors, equipment and accessor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unication devices intended solely for use in the vehicle);
- 3) land or building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omes and dwellings) ;
- 4) travellers' checks, tickets of any kind, negotiable instruments, bullion, rare or precious coins, cash or its equivalent, philatelic or numismatic property ;
- 5) plants or animals ;
- 6) consumables and perishables;
- 7) items which the Insured damages through alteration (including cutting, sawing, or shaping) ; or
- 8)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erformance or rendering of labour or maintenance, repair or installation of products, goods, or property, or professional advices of any kind).
- 9) Used, rebuilt, remanufactured, Antiques and collection items
- 10) Application programs, operation system, other software
- 11) Rental, Lease or borrowing items under the care and control of insured
- 12) Real estate, furniture, mobile phone and jewelry
- 13) Losses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program
- 14) Losses due to willful act of Insured, Assured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
Items purchased for resale, professional or commercial use
- 15) Losses covered by a manufacturer's warranty, recall or class action suit
- 16) Losses covered by Insured's exchange or refund policy
- 17) Items breakage, loss and theft from, in, or upon vehicles (including but not limited any land, water or air transportation)
- 18) Items which insured damage through alteration
- 19) Items can be made reproduction (including multimedia files, movies or music files)
- 20) Items breakage resulting from war or hostilities of any ki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vasion, rebellion, riot or civil commotion)
- 21) Items breakage resulting from attachment or provisional attachment by

- any government, public authority or customs official
- 22) Items breakage caused by illegal activity or acts
 - 23) Loss resulting from such as flooding, disappearance and fire
 - 24) Service items of travel, reservation
 - 25) Loss resulting from expendable goods or parts
 - 26) Insured not care for cases such as delivery, conducting and indirect handling with jewels, camera and video recording device.
 - 27) Arising out of, based upon such as earthquake, eruption, tsunami like as the natural disaster.
 - 28) Ordinary abrasion such as wear, crack and corrosion with out of functional, harmful insect, wrong using.
 - 29)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tributed to by or arising from :
 - Any chemical, biological, bio-chemical or electromagnetic weapon
 - 30) Contamination by radioactivity from any nuclear fuel or from any nuclear waster and the radioactive, toxic, explosive or other hazardous, except for 29 article.
 - 31) Items would be extinction due to exercise of public power.
 - 32) Visual damage without functional matters (pitting, coloring, scratch, rust)
 - 33) All cost from the storage of data affected from damage.
 - 34) Transportation cost to repair affair.
 - 35) In case of repair from an unlicensed agency.
 - 36) No proof for accident claim. In case of mystery loss without the proof of illegal act.
 - 37) Arising out of, based upon or attribute to any theft and loss : careless acts at public place such as subway, park etc. or absent without leave.(But insurer cover if insured conducted any safety actions as lock-up).

Stolen items must be reported as stolen to the police or an appropriate authority where the incident took place without hesitation.
 - 38) Loss and theft at transportation without the attention.

Other exclusions will be given according to the Policy Schedule.

PART V. TERMS AND CONDITIONS

The coverage provided by this Policy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

A. Notification of Claim :

If any covered loss occurs, notice must be provided to the Company without hesitation after the incident occurred. The Insured shall take all reasonable measures to protect, save, and/or recover the property.

B. Claim Forms :

The company or its authorized agent, upon receipt of a notice of claim, will furnish to the Insured the necessary forms for filing proof of loss.

C. Proof of Loss :

Written proof of loss including any required information necessary to support a claim must be furnished to the Company or its authorized agent at its said location without hesitation after the date of the incident.

For Purchase Assurance Claims, the Insured must complete the claim form and attach all requested documentation, including a legible copy of the card charge slip and/or store receipt and police report or other proof of loss.

D. Time of Payment of Claims :

Benefits payable under this Policy for any loss will be paid immediately upon receipt of the written proof of such loss and all required inform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claim. The Company may in any claim for damage recoverable hereunder, require the Insured to send the damage item to an address designated by the Company at the Insured's expense.

E. Payment of Claims :

All benefits payable will be paid to the Insured or, in the case of death, to the Insured's estate.

F. Misrepresentation and Fraud :

Coverage as to an Insured shall be void if, whether before or after a loss, the Insured has concealed or misrepresented any material fact or circumstance concerning this insurance or the subject thereof, or the interest of the Insured therein, or if the Insured commits fraud or false swearing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regoing.

G. The Company's Right to Recover from Others :

If the Company makes payments, it is entitled to recover such amounts from other parties or persons. Any party or person to or for whom the Company makes payment must transfer to us his or her rights of recovery against any other party or person. The party or person transferring such must do everything necessary to secure these rights and must do nothing that would jeopardize them.

H. Obligation to Prevent Damage

Upon occurrence of any insured events,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shall exert efforts to prevent and alleviate the relevant damages. If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neglects to make such efforts due t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Company shall deduct from the total damages an amount equal to the damages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or mitigated.

I. Statute of Limitation

The claim for insurance proceeds and the claim for return of insurance premium and surrender value shall extinguish unless exercised within three (3) years.

J. Choice of Law For Policy Disputes

The construc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policy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nd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disput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policy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K. Entire Contract : Changes :

This Policy, including any endorsements and attached papers, constitutes the entire contract of insurance. No change in this Policy shall be valid until approved by an executive officer of the Company and unless such

approval is endorsed and attached hereto. No agent has authority to change this Policy or to waive any of its provisions.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PART VI. ADDITIONAL PROVISIONS

1. Policy Period. This Policy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Policy Effective Date shown on the first page of this Policy and will remain in force unless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is part VI.

2. Premium Adjustment. The premium due for this Policy stated in the Policy Schedule as attached to the Policy is a minimum and deposit premium only. Upon the termination of this Policy, the actual premium shall be excess against the deposit premium and then policyholder must pay an additional premium according to the accurate calculation. When the total premium actually adjusted are less than a minimum and deposit premium, refund premium is not payable.

The Policyholder should report all documents related in settlement of premium upon the termination of this policy.

3. Examination and Audit. The company shall be permitted to examine the Policyholder's records relating to the Policy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and upon reasonable advance notice at any time during the Policy term and within three years after expiration of the Policy or until final adjustment and settlement of all claims hereunder, whichever is later.

4. Assignment. This Policy is not assignable, but benefits may be assigned.

5. Cancellation. The company may cancel this Policy at any time by written notice delivered to the Policyholder or mailed to the last address as shown on the records of the Company, stating when, not less than 31 days thereafter, such cancellation shall be effective; the policyholder may cancel this policy at any time by written notice delivered or mailed to the Company effective on receipt or on such later dat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ce.

In the event of such cancellation by either the Company or the Policyholder, the Company shall promptly return the unearned premium paid, if any, and the Policyholder shall promptly pay the earned premium which has not been paid. Such cancell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originating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cancellation.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Being Stolen Hazards(Risks) Exclusion Clause

It is agreed and understood that otherwise subject to the coverage, exclusions, provision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the Policy or endorsed thereon, we do not cover risks of being stolen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

Special Clause for Extension on Covered Purchase

Notwithstanding the exclusions on Section 4. in the schedule, if a covered purchase (_____) is stolen or damaged, benefits will be paid subject to Section 1 (Purchase Protection: Valuation), up to the amounts described in Section 2.(Purchase Protection: Scope of Coverage) Other term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limitations stated in the Policy Schedule and its coverage.

Special Clause for Fire Risks Coverage

Notwithstanding the exclusions on Section 4. in the schedule, The covered purchase will be covered the loss resulting from fire. Other term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limitations stated in the Policy Schedule and its coverage.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No (re)insurer shall be deemed to provide cover and no (re)insurer shall be liable to pay any claim or provide any benefit hereunder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 of such cover, payment of such claim or provision of such benefit would expose that (re)insurer to any sanction, prohibition or restriction under United Nations resolutions or the trade or economic sanctions, laws or regu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or United States of America.

해외직접구매물품 운송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약관상의 제4장 면책사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상 물품이 보장기간 중에 도난, 파손, 불착되었지만 담보대상 물품의 판매자 등(구매대행업체, 배송대행업체를 포함)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구매비용(구매시 발생하는 배송비용과 관세를 포함합니다)을 보험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및 보상횟수 내에서 실손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불착이란, 구매 후 특정기간 ()일 동안 구매물품을 전달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담보대상 물품 중 한 쌍이나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회사는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개별적으로 수리, 대체할 수 없어서 전체세트를 수리, 대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단,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으로 된 제품이 보석류나 미술품 등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의 일부로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도난 또는 파손된 특정 부품에 대한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목적물 또는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키거나 묵인 하에 생긴 손해
3. 해충에 의한 파손 손해
4. 판매자 및 구매대행업체, 배송대행업체 등에서 보상 하는 손해
5. 전문적인 서비스(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노동 또는 보수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재산의 수리 및 설치, 도움 및 지원 라인에서 보증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6. 정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부정 수단(사기), 점진적인 악화, 오용에 의한 손해
7.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한 손해
8. 전쟁 또는 모든 유형의 적대행위(침략, 폭동, 내란, 소요 또는 시민소동 등)로 인한 손해
9.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0. 위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1. 정부, 공공기관 또는 세관공무원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12. 밀수품(또는 금제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3. 천재지변(홍수, 태풍, 지진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4.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품질보증정책(구매만족보장 등의 서비스 포함)에 해당하는 손해
15. 통상적인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위험손해
16. 보험의 목적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뚫,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
17. 판매자 등(구매대행업체, 배송대행업체 포함)의 파산, 지급불능, 영업정지, 연락두절 및 고의적인 지급 지연 또는 거부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손해

18. 아래 기재된 물품에 발생한 손해

- (1) 선박,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나 이들의 모터, 장비와 부속용품 등
- (2) 토지 또는 건물, 영구적으로 설치된 장치, 시설 및 구조물 등
- (3) 여행자 수표, 모든 종류의 티켓, 양도성 증서, 금(은)괴, 희귀하거나 고가의 동전, 현금 또는 동등한 물물, 수집 우표 또는 화폐 등
- (4) 식물 또는 동물
- (5) 소모품 및 부패하기 쉬운 것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작업(절단, 재봉, 톱질 또는 변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파손된 제품
- (7) 제3자 또는 일반운송업자(항공사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자가 운송업을 겸하는 경우 계약자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잘못 배달된 물품
- (8) 일반대중 또는 단체의 이용, 회원집단에 개방되어 있는 위치나 장소에서 잠금 장치나 보호 없이(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기타 책임자가 팔이 달을 수 있는 거리보다 멀게 공공장소에서 방치하거나 주의, 보관, 관리에 태만)하여 도난을 당한 물품.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무처, 학교, 종교사원은 공공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9) 재판매, 직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물품
- (10) 건설현장에 보관된 제품
- (1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 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 (12)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분실한 물품과 원인 불명으로 사라진 물품(분실의 유일한 증거가 설명되지 못하거나 그 물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13) 중고품 및 재생 물품, 재조립 물품, 재제작 물품, 이전에 누군가 소유한 물품
- (14) 모든 종류의 수집품 및 골동품
- (15)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 (16) USA / EU / UN이 지정한 무역 및 경제 제재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

제3조 (담보대상 물품의 범위)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대상 물품의 범위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해외직구운송 보장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에 가입하고, 서비스 가입기간 중에 서비스 제공 카드사의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한 새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상품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손해 발생시에 회사는 구매물품에 대한 재구매비용(재구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용과 관세를 포함합니다)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③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 보험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지급하는 총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Loss Cap 손해율 ()%로 합니다.

* 용어정의 *

Loss Cap 손해율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정산보험료 포함) 대비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지급준비금 포함)의 비율로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손해율)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LossCap손해율 =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지급준비금 포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정산보험료 포함)] x 100

제5조 (보장대상 계약 명세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이 보험에 가입된 서비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주기 및 양식에 따라 전산Data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6 조 (기록의 열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가입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근거문서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관련 기록, 문서 또는 파일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제 7 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준수사항)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에 약관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서비스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된 서비스계약서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손해액 산정 및 처분절차 수행 등 보험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이의 검증, 참관 및 문서열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운송중 도난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해외직접구매물품 운송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운송중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운송중 파손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해외직접구매물품 운송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운송중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불착 손해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해외직접구매물품 운송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구매물품의 불착(구매자에게 배송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도난 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약관 제3장 보장조항에도 불구하고 구매품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파손 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약관 제3장 보장조항에도 불구하고 구매품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Special Clause for Return Shipping Costs

Article 1 (Damage to Compensate)

The company shall compensate the individual insured for the following costs if returned to repair or exchange the collateralized goods, despite the warranty terms of Part III. Description of Coverage in the general agreement.

- (1) Return shipping cost
- (2) The cost of the seller re-shipping the repaired or exchanged item to the purchaser
(However, the costs covered by the seller shall not be included.)

Article 2 (Exclusions)

The company shall not compensate any damages caused by the following reasons:

- (1) Expenses incurr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eller or carrier
- (2) Expenses incurred by direct delivery costs, not logistics costs
- (3) Expenses for which shipping receipts and documents are not proven
- (4) Any uncompensated damage listed in Part IV. Exclusions

Article 3 (Definition of the collateralized goods)

The collateralized goods covered by the Special Clause for Return Shipping Costs are defined as new products (including new products bought by overseas online purchasing agency) that the individual insured makes a direct overseas purchase.

Article 4 (The Limit of Insurance Payment)

The benefit covered by the Company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insured (limit of coverage) written on the Policy Schedule.

Article 5 (Insurance Claim)

In case the insured claims the insurance,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pany.

- (1) Confirmation documents of purchased goods and reasons for delivery
- (2) Receipt of expenses for delivery
- (3) Insurance claims

(4) Any document that the Company needs to pay reimbursement

Article 6 (Compliance Regulations)

Matters that are not specified in this special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반품배송비용담보 특별약관 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상의 제3장 보장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가 구매한 담보대상물품을 배송받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판매자 및 구매대행업체의 규정에 맞게 반품을 완료한 경우, 발생한 반품배송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의사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의 “피보험자가 구매한 담보대상물품을 배송받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반품한 경우”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반품신청과 판매자에게 반품배송이 모두 완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일자와 반품된 물건이 판매자에게 도착하는 일자는 택배사에서 표기한 일자로 같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판매자 및 구매대행업체, 배송대행업체 등에서 보상하는 손해
2. 물류 비용이 아닌 직접 전달비용
3. 배송관련 영수증 및 서류가 증명되지 않는 비용
4. 제4장 면책조항에 나열된 조항에 해당하는 손해

제3조(담보대상 물품의 범위)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대상 물품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효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불하여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한 새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대행으로 구매된 상품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지급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의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매물품 확인 서류 및 배송 사유
2. 배송에 들어간 비용 영수증
3. 보험금 청구서
4. 구매물품의 수령일이 기입되어 있는 배송확인서
5. 기타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빙자료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다수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제 1 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 ③ 제 1 항의 총 피보험자수 100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2 조 (계약자)

계약자는 제 1 조(적용범위)의 상품다수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3 조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 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5 조(약관 등의 교부)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요약 약관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 4 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 4 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3 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험가입금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 3 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피보험자의 통지)

-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 1]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의 보장은 제 1 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 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 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 매 6 개월 ☐, -기타 ☐,()

제 4 조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중
 - 매주 ☐, - 매 6 개월 ☐, -기타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 5 조 (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 4 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 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피보험자 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 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 3 조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 일 이내에 제 5 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 7 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에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 8 조 (적용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 9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양식 1]

피보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품구입일	날 인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기간 설정에 따른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 4 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 3 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 특별약관**제 1 조 (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 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제 1 종 단체(급여단체)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5 인 이상의 단체

2. 제 2 종 단체(법정단체)

제 1 종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5 인 이상의 단체

3. 제 3 종 단체(규약 단체)

제 1 종 및 제 2 종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5 인 이상의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 인 이상의 단체

제 2 조 (계약자)

- ①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표계약자, 개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여보험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제 3 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조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 개월 동안 1 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4 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 1 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취급계약 특별약관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 3 조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1 조 (계약의 적용범위)

-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 1 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 2 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 3 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제 1 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 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상법 제 735 조 3 의 적용)

- ① 제 1 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 2 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단체요율의 적용)

- ① 제 1 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 조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 1 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6 조 (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 7 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제 1 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3 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조(예치 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 개월 동안 1 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4 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 1 항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The balance of this page is intentionally blank.>